

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605호 2023. 10. 20.(금)

입 법 예 고

고성군 공고 제2023-1577호 고성군 주택5 화재피해 군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

고 시

고성군 고시 제2023-200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7

화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고성군, 편집: 인구청년추진단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공고 제2023-1577호

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0. 20.

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. 10. 4.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피해군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임시거처 제공(안 제3조)
- 다. 주택복구비 지원(안 제4조)
- 라. 심리회복 지원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안전관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

- 1) 주소: (52943)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안전관리과

2) 전화: (055)670-2503, 팩스: (055)670-2509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

붙임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.

고성군 규칙 제 호

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피해군민”이란 「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군민을 말한다.
2. “임시거처”란 피해군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(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)과 숙박시설을 말한다.
3. “임시거처 지원금”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임시거처 제공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군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

1.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
 - 가. 지원기준: 1동
 - 나. 지원액: 임차료의 80퍼센트(운반비 포함)
2. 숙박시설: 실비 지급액의 80퍼센트

③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주택복구비 지원)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복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소: 300만원

2. 반소: 200만원

3. 부분소: 100만원

② 주택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소유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,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.

제5조(심리회복 지원)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군민을 대상으로 「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화번호:
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고성군 고시 제2023-200호

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0. 19.

고 성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	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변경사유
(별지참조)			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폐지고시일	폐지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(☎055-670-26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거류면 감서리 247-2	거류면 감서1길 132	2023.10.19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거류면 감서리)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	
2	하이면 덕호리 712	하이면 하이로 203	2023.10.19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하이면)을 이용하여 하이로로 명명	
3	영오면 영산리 995	영오면 영산4길 387-11	2023.10.19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영오면 영산리)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	
4	동해면 외곡리 785	동해면 감서3길 16	2023.10.19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거류면 감서리)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	
5	고성읍 수남리 244-8	고성읍 남포로68번길 61	2023.10.19.	건물번호부여신청	남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68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	
6	고성읍 이당리 592	고성읍 갈모봉숲길 42	2023.10.19.	건물번호부여신청	갈모봉자연휴양림 산책길 명칭	